##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355

2024. 4. 25. 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자원순환과)
- 나. 상정의결
  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4. 25.)
    - "원안가결"
- 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)
- 가.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업체의 위탁기간 만료(2024. 6. 30.字)에 따라 강남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 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 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추진근거
    - 폐기물관리법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 및 동법 시행령
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
#### ㅇ 추진 필요성

-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재활용품선별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####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ㅇ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
- ㅇ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시설유지 관리
- 대형생활폐기물 해체 및 선별처리
- 홍보관 운영 등 운영 일체
- ㅇ 그 밖에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등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강남환경자원센터 (재활용품 선별시설)

○ 준 공 일 : 2013. 7. 18.

○ 위 치: 강남구 헌릉로745길 49 (율현동 141-16)

○ 규 모: 지상1층, 지하3층 (대지면적 18,125㎡, 연면적 11,011.69㎡)

○ 시설현황 :

충 별 (11,011 m²)	지상1층 (321 ㎡)	지하1층 (1,076 m²)	지하2층 (4,815㎡)	지하3층 (4,799㎡)	임시선별장 (가설건축물)
용도	• 홍보관 • 경비실	<ul><li>관리실</li><li>회의실</li><li>직원식당</li><li>휴게실</li><li>샤워시설</li></ul>	재활용품 보조선별시설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반입시설     전기실    ·탈취시설     ·세차시설	· 재활용품 주반입 및 선별시설 ·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 ·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· 폐수처리시설 · 공조설비	<ul> <li>재활용품 선별시설</li> <li>대형폐기물 적환</li> <li>및 선별시설</li> <li>스티로폼 감용시설</li> </ul>

## ㅇ 시설기능

구 분	재활용품 선별처리	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	대형생활폐기물 적환 및 선별
용 량	80톤/일	300톤/일	35톤/일

- 마. 민간위탁 기간 : 2024. 7. 1. ~ 2027. 6. 30. (3년)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,380,800천원(2024년 본예산 기준)

통계목	구분	세부집행내역	<b>예산액</b> (단위 : 천원)
총계			2,380,800
민간	소 계		2,380,800
위탁금	운영비	· 운영지원금 62,000원×3,200톤×12월=2,380,800,000원	2,380,800

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

####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
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7. 23.〉

##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3조(운영·위탁) ① 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, 또는 그 밖의 관리·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12.18〉
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구청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18.>

## 제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12.18, 2016.05.04〉

#### ○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 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"구의회" 라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- 2. 재계약 하는 경우

## **5. 검토보고 요지**( 전문위원 : 이문성 )

## 1 동의안 세부 내용의 검토

강남환경자원센터의 위탁기관 만료(2024년 6월 30일)에 따라 공개모집을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금번 동의안이 제출되었음.

#### 〈표〉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개요

① 시 설 명 : 강남환경자원센터 (구립 재활용품선별시설)

② 위 치 : 강남구 헌릉로745길 49 (율현동 141-16)

③ 규 모 : 지상1층, 지하3층 (대지면적 18,125㎡, 연면적 11,011.69㎡)

④ 시설기능

구 분	재활용품 선별처리	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	대형생활폐기물 적환 및 선별
용 량	80톤/일	300톤/일	35톤/일

현재 수탁자인 ㈜알렘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재활용품 선별처리, 시설유지관리 및 홍보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왔음.

## 〈표〉 위탁운영 현황

① 운영방식 : 민간위탁 (기준운영비: 4,368,922천원)

② 위탁기간 : 2021. 7. 1. ~ 2024. 6. 30. (3년)

③ 업 체 명 : 주식회사 알엠 (대표 : 김영민)

④ 위탁범위: 재활용품 선별처리, 시설유지관리, 홍보관 운영 등 운영 일체

⑤ 근무인원 : 60명(2023년 1월 기준)

⑥ 선별실적

구 분	2021.6~12월	2022년	2023년	2024.1~2월
반입량	14,316톤	27,748톤	31,605톤	5,305톤
/선별량(선별율)	/9,637톤(67.4%)	/19,378톤(69.8%)	/22,631톤(71.7%)	/3,819톤(72%)

※ 재위탁 사유 : 위탁기간 만료(2024. 6. 30.)

### 〈표〉 강남환경자원센터 인력현황

(기준 : 2023. 1. 31.)

	구 분	인원	직 무 및 역 할
		1	대표 및 관리책임
		3	시설, 운영 관리 및 인사 총무
	관리팀	3	전기, 기계, 소방 및 장비관리, 공무
		3	주방 및 미화, 기타
		6	경비
	집게차	1	반입된 물품 콘베이어 투입
장비팀	압축기&지게차	6	지게차 운전 및 압축물, 압롤박스 이송
	합국/(&시계사	0	압축기 운전 및 자동선별기 유지관리
	유리병 선별		유리병류 선별
	플라스틱 선별	21	혼합플라스틱류 선별
선별팀	EPR 선별	1 3 시설, 등 3 전기, 기계 3 주 6 반입도 기계차 운전 압축기 운기	혼합폐비닐류 선별
(건물임 	파지선별		대형파지류 선별
	스티로폼 선별	2	스티로폼 감용
	야간선별팀	4	반입된 물품 적치 및 종류별 일부 선별
	합계	60	

## 〈표〉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지원금 지급 현황

구분	반입량 (톤)	선별량(톤) / 평균선별률(%)		운영지원금(원)
2021	29,801	20,978	70.4%	1,828,931,000
2022	27,748	19,378	69.8%	1,609,384,000
2023	31,605	22,631	71.6%	1,833,090,000

- ※ 운영지원금 지급방식: 월 반입량(톤) X 톤당단가
  - (참조) 최저임금 상승분과 폐기물처리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톤당단가 조정
  - (21년 55,400원, 22~23년 58,000원, 24년 56,000원)
-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을 대상으로 하는 바, 재활용 선별처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전문성 등이 요구 된다고 하겠음.
- ※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<sup>1)</sup>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, 즉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,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이나 기술이 요하는 사무,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- 집행부는 조례<sup>2)</sup>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민간위 탁에 따른 사업 수행의 적절성,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, 예산의 효율적 집행,
- 1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2) 2) 「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이용시민의 만족도 등을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의받아야 할 것임.

그러나 집행부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성과평가절차를 종료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, 이로 인해 집행부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여짐.

## 2 동의안에 대한 결론

-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,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, ③ 대민서비스 향상,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,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- 강남환경자원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바, 본 동의안을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.
- 다만, 민간위탁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불구하고, 조례상 명시된 성과평가가 누락된 상황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점에서 의회의 심의권을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.
- 으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: "생략"
- 7. 토론 요지: "없음"
- 8. 심사 결과 : "원안가결"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"없음"

10. 기타 사항 : "없음"

붙임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355 번 호

제출년월일 : 2024. 4. 12. 제 출 자 :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: 자원순환과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업체의 위탁기간 만료(2024. 6. 30.字)에 따라 강남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추진근거
    - 폐기물관리법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 및 동법 시행령
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  - 추진 필요성
    -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재활용품선별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####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
-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시설유지 관리
  - 대형생활폐기물 해체 및 선별처리
  - 홍보관 운영 등 운영 일체
- 그 밖에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등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강남환경자원센터 (재활용품 선별시설)

○ 준 공 일 : 2013. 7. 18.

○ 위 치 : 강남구 헌릉로745길 49 (율현동 141-16)

○ 규 모 : 지상1층, 지하3층 (대지면적 18,125㎡, 연면적 11,011.69㎡)

○ 시설현황 :

충 별 (11,011 m')	지상1층 (321 ㎡)	지하1층 (1,076 m²)	지하2층 (4,815㎡)	지하3층 (4,799㎡)	임시선별장 (가설건축물)
용도	• 홍보관 • 경비실	<ul><li>・관리실</li><li>・회의실</li><li>・직원식당</li><li>・휴게실</li><li>・샤워시설</li></ul>	재활용품 보조선별시설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반입시설     전기실    · 탈취시설     · 세차시설	· 재활용품 주반입 및 선별시설 ·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 ·생활폐기물 압축시설 ·폐수처리시설 ·공조설비	<ul> <li>재활용품 선별시설</li> <li>대형폐기물 적환</li> <li>및 선별시설</li> <li>스티로폼 감용시설</li> </ul>

## ○ 시설기능

구 분	재활용품 선별처리	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	대형생활폐기물 적환 및 선별
용 량	80톤/일	300톤/일	35톤/일

마. 민간위탁 기간 : 2024. 7. 1. ~ 2027. 6. 30. 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,380,800천원(2024년 본예산 기준)

통계목	구분	세부집행내역	<b>예산액</b> (단위 : 천원)
총계			2,380,800
민간	소 계		2,380,800
위탁금	운영비	· 운영지원금 62,000원×3,200톤×12월=2,380,800,000원	2,380,800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

####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
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7. 23.〉

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
제3조(운영·위탁) ① 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, 또는 그 밖의 관리·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수 있다. 〈개정 2009.12.18〉

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9.12.18.〉

제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12.18, 2016.05.04〉

#### ○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- 2. 재계약 하는 경우

작성자 : 자원순환과 시설장비팀 행정8급 박지은(☎ 02-3423-5975)